

束草市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

審查報告書

1994. 11. 30.

산업위원회

1. 審查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년 11월 28일 속초시장

나. 회부일자 : 1994년 11월 28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
('94. 11. 30) 상정,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환경보호과장 엄무남)

가. 제안이유

-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비한 폐기물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쓰레기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·징수사항을 삭제하여
- 폐기물관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청소행정 수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폐기물수집수수료 관련 사항의 삭제
-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사항의 삭제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: 없 음

4. 質疑 및 答辯要旨 : 없 음

5. 討論 要旨 : 없 음

6. 審查結果 : 원안 가결

7. 少數意見의 要旨 : 없음

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음

첨 부 : 1.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속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종개정 조례안

의안	
번호	313

제출 년월일 : 1994. 11

제출자 : 속초시장

□ 제안사유

-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한 폐기물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쓰레기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사항을 삭제하여
- 폐기물을 관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청소행정 수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- 폐기물 수집 수수료 관련 사항의 삭제
-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사항의 삭제

□ 부 록

- 시정조정위원회 부의결과 : 부
- 일정예고 결과보고서 : 부

속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종개정 조례안

의안	
번호	313

제출 년월일 : 1994. 11

제출자 : 속초시장

□ 제안사유

-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한 폐기물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쓰레기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사항을 삭제하여
- 폐기물을 관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청소행정 수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- 폐기물 수집 수수료 관련 사항의 삭제
-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사항의 삭제

□ 부 록

- 시정조정위원회 부의결과 : 부
- 일정예고 결과보고서 : 부

속초시조례 제 호

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"속초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"를 '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·징수에관한조례"로 한다.

제8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行	개 정 安
<p>제2조(일반폐기물의 처리 등) ①(생략)</p> <p>②시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함에 있어 <u>속초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</u>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) ①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는 <u>속초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</u>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.</p> <p>제8조(수수료의 감면)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.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, 성명, 쓰레기발생량 등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③시장은 일반폐기물수집, 운반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자의 일반폐기</p>	<p>제2조(일반폐기물의 처리 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 <u>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·징수에관한조례</u>----- -----</p> <p>제6조(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 <u>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·징수에관한조례</u>----- -----</p> <p>제8조 (삭 제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물을 수집, 운반하였을 때에는 수집, 운반업체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과태료의 부과, 징수) ①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 징수한다.</p>	<p>제11조 (삭 제)</p>
<p>제12조(청문)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 및 절차에 대하여는 법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12조 (삭 제)</p>
<p>제13조(과태료처분 통지 등)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</p>	<p>제13조 (삭 제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.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,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
<p>제1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고 100만원까지로 하며 항목별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	제14조 (삭 제)
<p>제15조(이의제기 및 법원예의 통보)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</p>	제15조 (삭 제)

현 행	개 정 안
<p>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제16조(강제징수)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</p>	<p>제16조 (삭 제)</p>
<p>제17조(과태료의 귀속)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.</p>	<p>제17조 (삭 제)</p>
<p>제18조(과태료수납부 비치, 관리)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, 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18조 (삭 제)</p>
<p>제19조(준용규정)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세조례를 준용한다.</p>	<p>제19조 (삭 제)</p>